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 관리방법 안내

□ 급여계약통보서 관련 고시개정 내용

- 장기요양 인정등급별 월 한도액 상향 ... ' 17.1.1.
- 급여종류별 수가 상향(방문목욕 제외) ... ' 17.1.1.
- 주야간보호 토요 가산비율 상향(20 → 30%) ... ' 17.1.1.
- 월 한도액 150% 산정기준 추가(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 8시간 월15일이상 이용) ... ' 17.1.1.
- 방문요양 1회 제공시간 기준 변경(1,2등급만 210분, 240분이상 제공) ... ' 17.3.1.

□ 급여계약통보서 전산개발 내용

- 전산위치 : 기관포털/ 급여계약통보서 등록변경해지/ 급여계약내용 등록(재가)
 - '17.1월 이후 급여계약통보서 고시개정 내용 적용 개발완료 ... '16. 12. 26.(월)

□ 급여계약통보서 전산관리 안내사항

- 장기요양기관 급여계약통보서 전산관리 요령
 - 공단 전산개발('16. 12. 26.) 이후 장기요양기관은 고시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17.1월 이후 급여계약통보서 전산등록 가능
 - 공단 전산개발('16. 12. 26.) 이전 장기요양기관이 등록한 '17.1월 이후 급여계약통보서의 급여제공 일정이 고시개정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급여계약내용 등록(재가) 전산화면의 '**월금액 재산정**' 버튼을 눌러 반영

급여계좌내용 등록(제가) [npia107p01]

① 연월: 2017년 1월, 대상자: 임() (9-15) - 발문요양

② 조회

③ 월금액 재산정

장기요양대상자

급여일정등록 변경 × 급여일정 종료시간이 익월인 경우는 노란색으로 표시됩니다.

④ 월금액: 957,000 원

⑤ 월한도액: 981,100 원

⑥ 월한도 초과금액: 0 원

⑦ 월한도 미포함금액: 0 원

⑧ 월금액: 1,019,040 원

⑨ 월한도액: 1,043,700 원

⑩ 월한도 초과금액: 0 원

⑪ 월한도 미포함금액: 0 원

○ 전산위치 : 기관포털/ 급여계약/ 급여계약통보서 등록변경해지/ 급여계약내용 등록(재가)

- 장기요양기관이 등록한 '17.3월 급여계약통보서의 방문요양 210분 또는 240분이상 급여제공 일정에 대해 산정불가함으로(1~2등급자 제외)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자에게 관련내용 안내 후 급여일정을 미리 삭제
하여 급여계약통보서 전산등록 오류 방지

○ 수가 상향에 따른 입소이용의뢰서 및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 관리

-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수가상향에 따라 기존 급여종류별 월 이용금액이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 상 승인된 월 이용금액을 초과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을 유지하고자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 변경 신청 할 수 있음.

※ 「2016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I」 143p 【 입소·이용 변경절차 】 참고

- 입소이용 변경 신청을 접수받은 지자체는 급여종류별 이용횟수 및 시간 변경이 없으면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접수 내역을 처리함.

※ 요양보험운영과-8744호(2015.12.23) 「기초수급권자 등 장기요양급여이용 관련 협조요청」

- 입소이용 변경 신청 승인 전까지는 기존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에 승인된 급여종류별 월 이용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급여이용 가능

□ 장기요양기관 다빈도 Q&A

Q1 2017.1.1.부터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와 급여계약 문서 체결 시 급여종류별 제공시간 및 급여비용을 명시하였다면 고시개정 내용에 따라 2017.1.1.부터 급여비용이 변경 되었으므로 계약자에게 사전 안내하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합니다.

다만, 급여계약서 상 급여종류별 이용시간 및 횟수만을 기재하였다면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Q2

3,4등급 수급자가 방문요양 240분 서비스를 계약하여 이용하고 있는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장기요양 급여계약서 상 2017.3.1.이후 급여계약기간을 포함하는 3,4등급자의 경우 방문당 240분 요양서비스 제공 시간을 명시하여 급여계약을 작성하였다면 고시개정 내용에 따라 2017.3.1.부터 급여제공이 불가함으로 계약자에게 사전 안내하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Q3

2017.1.1.부터 재가급여 수가가 상향 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금과 같이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장기요양 기관 입소.이용 변경신청을 꼭 해야 하나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경우 방문요양 급여비용 상향에 따라 월 이용금액이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의 월 이용금액을 초과함으로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을 유지하고자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로 최초 신청 절차와 동일하게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 변경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기존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의 방문요양 월 이용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횟수 및 이용시간을 변경하여 제공하는 경우는 변경신청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 변경신청 승인전까지는 기존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에 따른 급여종류별 월 이용금액 내에서만 서비스 이용 가능하오니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급여제공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2등급 기초생활수급권자 입소.이용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 승인 내역
2016.1.1.~2017.12.31. 방문요양 240분(43,500원) × 월 20회 = 월 870,000원

- 17.1월 방문요양 240분 월 20회를 유지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방문요양 240분(45,090원) × 20회 = 월 901,800원 ⇒ 이용 불가능
- 17.1월 방문요양 이용시간 또는 횟수를 변경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방문요양 240분(45,090원) × 19회 = 월 856,710원 ⇒ 이용가능
 - 방문요양 180분(38,560원) × 22회 = 월 848,320원 ⇒ 이용가능
 - 방문요양 180분(38,560원) × 23회 = 월 886,880원 ⇒ 이용 불가능

2017.1.1.부터 시설급여 수가가 상향 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가
Q4 지금과 같이 요양시설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 변경신청을 해야 하나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를 지자체로부터 승인받아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해 있는 경우 급여비용 변경으로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 변경신청하지 않습니다.

4등급 기초생활수급자가 방문요양 240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Q5 2017.3.1.부터는 240분 서비스 제공이 불가한데요. 이런 경우 장기요양
기관 입소.이용 변경 신청을 해야 하나요?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에 승인된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의 방문요양 월 이용금액을 초과하지 않고 이용횟수 및 시간을 변경하는 경우는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2016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I」 143p 【 입소·이용 변경절차 】 참고

<예시> 4등급 기초생활수급권자 입소.이용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 승인 내역

2016.1.1.~2017.12.31. 방문요양 240분(43,500원) × 월 20회 = 월 870,000원

○ 17.3월 방문요양 이용시간 또는 횟수를 변경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방문요양 180분(38,560원) × 20회 = 771,200원 ⇒ 이용가능
- 방문요양 180분(38,560원) × 22회 = 848,320원 ⇒ 이용가능
- 방문요양 180분(38,560원) × 23회 = 886,880원 ⇒ 이용 불가능

5등급 주야간보호 급여일정을 등록하려는데 기존에 나타나지 않던
Q6 안내팝업이 보입니다. 인지활동형프로그램 급여제공 일정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내팝업 내용에 따라 등록하시면 됩니다. 인지활동형프로그램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안내팝업의 '예' 버튼을 눌러 인지활동형프로그램 급여제공 일정 등록이 가능한 '종사자 검색'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기존과 같이 '종사자 검색' 화면에서 치매전문 교육을 이수한 프로그램관리자 선택 및 급여제공 시간을 입력하고 해당되는 급여제공 일자를 선택하여 '저장 및 통보' 버튼을 눌러 전산등록 합니다.